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73호(號) 1927(昭和 2)년 11월 26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95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11월 26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내지(內地) 발착(發著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면사(綿絲)의 항(項) 나고야(名古屋), 오사카(大阪), 고베(神戸), 구루메(久留米) 발(發) 단동착(安東著) 특정임률(特定賃率) 기사(記事)1 및 면포(綿布: 옷 한 벌 감[著尺物] 및 고무를 교직[交織]하거나 또는 도포[塗布]한 것을 제[除]함)의 항(項) 오카자키(岡崎), 나고야(名古屋), 오사카(大阪), 고베(神戸), 구루메(久留米) 및 야나이쓰(柳井津), 시마바라(島原: 시마바라철도[島原鐵道]) 발(發) 단동착(安東著) 특정임률(特定賃率) 기사(記事)1 중(中) 「4백 근(斤)」을 「4백50근(斤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성선(省線), 만철선(滿鐵線) 발착(發著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면사(綿絲)의 항(項) 나고야(名古屋), 오사카(大阪), 고베(神戸), 구루메(久留米) 발(發) 만철선착(滿鐵線著) 특정임률(特定賃率) 기사(記事)1 및 면포(綿布: 옷 한 벌 감[著尺物] 및 고무를 교직[交織]하거나 또는 도포[塗布]한 것을 제[除]함)의 항(項) 오카자키(岡崎), 나고야(名古屋), 오사카(大阪), 고베(神戸), 구루메(久留米) 및 야나이쓰(柳井津), 시마바라(島原: 시마바라철도[島原鐵道]) 발(發) 만철선착(滿鐵線著) 특정임률(特定賃率) 기사(記事)1 및 면사(綿絲), 면포(綿布: 옷 한 벌 감[著尺物] 및 고무를 교직[交織]하거나 또는 도포[塗布]한 것을 제[除]함)의 항(項) 오사카발(大阪發) 만철선착(滿鐵線著) 특정임률(特定賃率) 기사(記事)1 중(中) 「4백 근(斤)」을 「4백50근(斤)」으로 개정(改正)함.